

# 교원 해외여행 및 연수규정(3-6-6)

최종 개정일 : 2017. 11. 15.

##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의 교원해외여행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건) 해외여행 및 해외연수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학교수업 및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소속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이 인정하는 자
2.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3. 해외여행 및 연수가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 2장 해외여행

제3조 (대상) ① 교원의 해외여행 대상 선정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단, 해외여행에 필요한 제반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학기 중 또는 입시기 간 중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임교원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2.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3. 외국 정부 및 외국어 학술, 문화기관의 초청 및 해외 공무 여행자

② 기타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기간) 교원의 해외여행 기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 3조 1호에 대한 여행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2. 제 3조 2호에 대한 여행기간은 동남아지역은 3일 이내, 구미 및 기타지역은 7일 이내로 인정한다. 단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 3조 3호에 대한 여행기간은 공무기간으로 한다.
4. 하계방학 중 해외여행은 3주 이내에서 총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신청 및 제출서류) 교원의 해외여행 신청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4조 1호 및 3호에 의한 해외여행은 여행 2주일 전 초청장을 첨부한 교원해외여행승인 신청서를 해외여행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4조 1호 및 4호에 의한 해외여행은 별도로 시행한다.

제6조 (선정방법) 제5조를 충족한 교원 중 근무연수, 교원업적평가, 대학기여도평가, 강의평가, 학과평가 등의 각종 평가를 감안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제7조 (준수사항) ① 해외여행으로 선정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장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의 목적, 기간,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없다.
2. 해외여행기간 중 본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신을 추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3. 해외여행기간이 끝나는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원에게 해외여행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소환) ① 해외여행중인 교원의 소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학사운영상 필요할 경우
2. 연구 및 각종 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
3. 대내외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경우
4. 제7조를 위반할 때

② 해외여행 중인 교원이 소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상 불이익 처분) ① 해외여행중인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01.28.)

1. 해외여행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귀국하지 않는 경우
2. 소환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귀국하지 않는 경우

② 총장은 제 8조 1항을 근거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각종 해외여행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교원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제 3장 연수

제10조 (대상) 교원의 해외연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임교원으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2. 재차 해외연수 신청은 전회의 연수종료 후 최소 6년 이상 본교에 근무한 경우 자격을 부여한다.

제11조 (연수인원 및 시기) ① 연수 인원은 학부(과)별 1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대학교 전임 교원수의 5%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개정

2019.02.27.)

② 학부(과) 내 연수중인 교수가 있을 경우, 연수종료 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02.27.)

제12조 (신청 및 제출서류) 교원의 해외연수 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학위취득 포함)를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 1년 전 교원해외연수 추진계획보고서를 해외연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여행예정일 2개월 전에 교원해외여행승인신청서 및 재정보증서, 서약서, 소속부서장 추천서, 초청대학의 초청장(원본이 입수되지 않은 경우는 추후제출 가능)을 해외연수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선정방법) 제10조를 충족한 교원 중 근무연수, 교원업적평가, 대학기여도 평가, 강의평가, 학과평가 등의 각종 평가를 감안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제14조 (기간) 해외연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4.28., 2017.11.15.)

제15조 (기간연장) 연구의 미완성 및 기타의 사유로 제 14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연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초 연수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의 확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해외연수기간연장 승인신청서
2. 연구계획서
3. 관련 외국기관장(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4. 소속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의 동의서
5. 서약서

제16조 (준수사항) 해외연수중인 교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총장의 허가 없이 해외연수의 목적, 기간,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없다.
2. 해외연수기간 중 본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신을 추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3. 해외연수기간이 끝나는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고서 제출) ① 해외연수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1. 해외연수기간 중에는 6개월마다 해외연수중간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개정 2017. 11. 15.)
2. 귀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제출
3. 귀국일로부터 1년 이내 해외연수 6개월 이하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지 1편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내일 경우 SCI급 논문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2편 이상 게재(개정 2017. 11.15.)

② 1항 이외에도 정책연구 및 지정과제 등의 업무를 부가할 수 있다.

③ 총장은 1항내지 2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보고의 의무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보수) ① 해외연수기간이 1년 이내인 교원의 보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② 총장의 허가를 받고 1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해외연수를 하는 교원의 경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교원업적평가) 해외연수 교원의 교원업적평가는 연구영역에 한하여 해외연수기간을 포함한 2년간 연구실적의 평균점수로 한다.

제20조 (근무의무) 해외연수교원은 귀국 후 연수기간의 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연수기간에 지급된 보수의 3배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21조 (소환)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면 해외연수중인 교원을 소환할 수 있다.

1. 학사운영상 필요할 경우
2. 연구 및 각종 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
3. 대내외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경우
4. 제16조 중 하나를 위반할 때

② 해외연수중인 교원은 소환 명령이 있을시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제22조 (신분상 불이익 처분)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해외연수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귀국하지 않는 경우
2. 소환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귀국하지 않는 경우
3. 귀국 후 의무 기간을 복무하지 않는 경우

② 전항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연수 기간 동안 지급 받은 급여액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7조 1항 및 2항을 불이행할시 지원금의 30%를 회수하며 차후 교내 연구비 신청과 추후 해외연수 신청 때 제한한다.

④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경우는 제1항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